

가축개량기술정보



社團 韓國家畜人工授精研發會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16-5 축산회관내

전화 : 02)587-0629

발행인: 이재우

02)586-9408

편집인: 경기문

FAX : 02)586-9408

더욱 적극적인 우리의 자세로

회장 이 재 우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공수정기술정보 4호를 발간함에 즐음하여 큰 성과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루어졌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문민정부의 신농정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냉철히 관찰해 봅시다.

이제껏 생업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우리의 사업이 가지적으로 축산발전에 밀없이 크게 기여했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식변화와 협회를 통해 비쳐진 우리의 모습이 이제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빛도 없이 어떻게 생사의 현장을 떨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개량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각별한 애축정신에 기인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인정 받고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낡았던 사고방식과 관행에 젖은 과오는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바로 이것은 UR타결과 함께 밀려 올 외세에 무릎을 꿇고 자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더 멀리 보고, 더 뛰며, 단합된 모습으로 어려운 우리 농촌을 살리는 데 큰 뜻을 합시다.

또한 우리가 담당한 개량의 첨병역할을 다하는데 매진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회원 여러분 각자의 각오와 개량의 소임에 대한 궁지를 가져야 합니다.

정부의 신농정에서 강조하는 국제경쟁력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시설의 현대화로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의 절감, 축산업 구조개선, 사양기술의 향상, 유통체계 개선 등으로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수출환경농업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바로 공격형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수출도 하고 우리 농촌의 환경과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단군이래 최악의 시련기에 있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은 우리 농촌을 파탄지경과 의욕상실의 위험한 고비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량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명분과 패기를 잃지 않고 궁지에 찬 사업으로 전개합시다.

그리고 양축농가에 용기를 불어 넣어 줍시다.

개량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축의 능력을 30%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정부도 최근 신농정추진계획에서 개량의 중요성과 회원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고 개량부분에 제도적인 참여방안까지 구상중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축산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사명의식으로 예전과 달리 더 적극적인 행동양식으로 한형제인 양축농가와, 정부와, 개량의 일익을 담당하는 자부심에 찬 개인과 조직을 활용한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변모하는 협회의 모습 자체가 회원 여러분의 향상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새로 改正된 畜產法

畜產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畜 產 法

第1章 總 則

第 1條(目的) 이 法은 家畜의 개량·增殖 畜產業의 構造改善, 家畜과 畜產物의 價格安定과 流通改善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畜產業의 발전을 도모하여 畜產農家の 所得增大와 畜產物의 안정적 共給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家畜”이하 함은 飼育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짐승·家畜등을 말한다.
2. “種畜”이라 함은 品種의 순수한 特徵을 지닌 繁殖用家畜으로서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받은 家畜을 말한다.
3. “畜產物”이라 함은 家畜에서 生產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加工品·原皮(原毛皮를 포함한다)·原毛 기타 家畜의 生產物로서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孵化業”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人工孵化施設에 의하여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家畜의 알을 孵化하는 業을 말한다.
5. “種畜業”이라 함은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繁殖用 家畜 또는 씨알을 生產·販賣할 目的으로 家畜을 飼育하는 業을 말한다.

第 3條(畜產發展施策의 강구) ① 農林水產部長官은 家畜의 개량·增殖, 畜產業의 構造改善, 家畜과 畜產物의 需要調節·價格安定 및 流通改善, 飼料의 안정적 需給, 家畜衛生등 畜產發展에 관하여 필요한 計劃과 施策을 종합적으로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 4條(畜產發展審議委員會)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畜產發展施策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水產部에 畜產發展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는 關係公務員·生産者·生産者團體·學界·畜產關係業界등으로 구성되어, 그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家畜改良 및 人工授精

第1節 家畜改良

第 5條(改良目標의 設定) ① 農林水產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改良對象家畜別로 計劃期間을 정하여 家畜의 改良目標를 設定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② 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道의 家畜改良推進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 農林水產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의 달성과 家畜改良業務의 效率적 추진을 위하여 畜產關係機關 및 團體中에서 家畜改良總括機關과 家畜改良機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農林水產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改良推進計劃의 施行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改良業務의 추진에 필요한 優良種畜 및 事業費등을 지원할 수 있다.

第 6條(家畜의 登錄) ① 農林水產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畜產關係機關 및 團體로 하여금 家畜을 飼育하는 者의 申請에 의하여 당해 家畜의 血統·能力·體型등 필요한 사항을 審查·登錄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查·登錄에 관한 기준 및 節次와 登錄機關등에 관하여는 農林水產部令으로 정한다.

第 7條(家畜의 檢定) ① 農林水產部長官은 畜產關係機關 및 團體로 하여금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家畜 또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씨알을 生產·販賣할 목적으로 飼育하는 家畜의 能力의 개량정도를 確認·評價하기 위한 檢定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의 종류·기준 및 節次와 檢定機關 등에 관하여는 農林水產部令으로 정한다.

第 8條(交配등의 제한) 農林水產部長官,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種畜이 아니거나 疾病에 걸린 수家畜에 대하여는 交配 및 家畜人工授精用精液(이하 “精液”이라 한다)의 採取를 제한할 수 있다.

第 9條(保護種畜의 지정) ① 農林水產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家畜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種畜 중에서 保護種畜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農林水產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種畜의 보호

및 家畜改良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保護種畜이 生產한 優良한 새끼가축을 選拔·육성하가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第10條(保護地域의 지정) ① 農林水產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家畜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家畜의 保護地域 및 당해 保護地域안에서 보호할 家畜을 지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保護地域안에서는 家畜傳染病을 발생 또는 傳播시킬 우려가 있는 家畜 기타 짐승의 飼育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農林水產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保護支援金의 지급등) 農林水產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種畜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地域안의 家畜으로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保護支援金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措置를 할 수 있다.

第12條(去勢) ①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家畜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家畜을 飼育하는 者에 대하여 수家畜의 去勢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去勢로 인하여 弊死한 家畜에 대하여는 補償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13條(種畜의 貸與 및 交換) 農林水產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家畜의 改良·增殖과 飼育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種畜을 農林水產部令 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他人에게 無償으로 貸與하거나 他人이 所有한 種畜과 交換할 수 있다.

第14條(種畜 등의 輸出入) ①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種畜·種畜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家畜·精液 및 家畜의 卵子·授精卵을 輸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產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農林水產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수입추천을 할 수 있는 種畜등의 生產能力·規格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第2節 人工授精과 受精卵移植

第15條(家畜의 人工授精) 家畜人工授精師(이하 “授精師”라 한다)가 아니면 精液을 取扱·처리하거나 이를 암家畜에 注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學術試驗用으로 필요한 경우와 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6條(授精師의 免許) ① 授精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自格을 갖추어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1. 大學 또는 專門大學의 畜產關聯學科를 卒業한 者로서 家畜繁殖 또는 人工授精에 관한 科目을 履修한 者
2. 獸醫師

3. 國家技術自格法에 의한 畜產技士 2級이상의 自格을 가진 者

4.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が 施行하는 授精師 試驗에 合格한 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授精師가 될 수 없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精神病者 또는 麻藥類中毒者

3.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 授精師의 業務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

第17條(授精師의 教育) ① 農林水產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授精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教育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에 필요한 經費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지원할 수 있다.

第18條(授精師의 免許取消等) 市·道知事는 授精師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偽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免許를 받은 때 許

2. 第16條第2項의 각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을 계속하여 2回이상 받지 아니한 때

4.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家畜人工授精所를 開設한 때

5.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家畜人工授精用으로 供給·注入하거나 암家畜에 移植한 때

7.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查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第19條(精液等 處理業의 許可) ① 種畜으로부터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採取·처리하여 販賣하는 業(이하 “精液等處理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필요한 施設 및 人力을 갖추어 農林水產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液等 處理業의 施設 및 人力에 관한 기준 기타 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水產部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精液等 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精液等 處理業者”라 한다)는 그營業을 休業·廢業하거나 休業후 營業을 再開한 때 또는 許可事項中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로부터 20日이내에 農林水產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0條(精液等 處理業의 許可取消等) 農林水產部長官은 精液等處理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人力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2. 種畜이 아닌 家畜으로부터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採取·처리하여 販賣한 때

第21條(家畜人工授精所의 登錄 등) ①授精師가 아니면 家畜人工授精所(이하 “授精所”라 한다)를 開設하지 못한다.

②精液 또는 受精卵을 암家畜에 注入 또는 移植하는 營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授精所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授精所가 아니면 家畜人工授精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授精所의 登錄을 한 者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하거나 休業후 營業을 再開한 때 또는 登錄事項中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로부터 20日 이내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授精所에서는 精液等處理業者가 生產하지 아니하거나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畜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域別畜產業協同組合·業鍾別畜產業協同組合 및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畜產業協同組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第22條(授精所의 登錄取消 등) 市長·郡守·區廳長은 授精所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授精所를 開設한 授精師의 免許가 取消된 때
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查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第23條(精液證明書等) ①精液等處理業者는 그가 처리한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에 대하여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의 확인을 받아 精液證明書·卵子證明書 또는 受精卵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授精師가 家畜人工授精을 하거나 受精卵을 移植한 때에는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人工授精證明書 또는 受精卵移植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第24條(精液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은 家畜人工授精用으로 供給·注入하거나 암家畜에 移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學術試驗用이나 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用 또는 移植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液證明書·卵子證明書 또는 受精卵證明書가 없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

2.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

第25條(授精師등에 대한 監督) ①農林水產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은 授精師·精液等處理業者 또는 授精所에 대하여 家畜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查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章 畜產物등의 需給 및 價格安定

第1節 需給調節

第26條(孵化業 및 畜產業의 登錄) ①孵化業과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種畜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孵化業과 種畜業의 登錄基準 기타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水產部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孵化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孵化業者”라 한다)와 種畜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種畜業者”라 한다)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하거나 休業후 營業을 再開한 때 또는 登錄事項 중 農林水產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로부터 20日 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農林水產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家畜의 개량과 畜產物의 需給調節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孵化業者 또는 種畜業者에 대하여 다음 각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種畜의 品種別 飼育狀況과 生產計劃書 또는 孵化計劃書의 제출
2. 種畜을 이용한 家畜의 生產·飼育 및 出荷 또는 孵化의 時期 및 量의 調節에 관한 사항
3. 種畜을 이용하여 生產한 家畜 또는 孵化에 의하여 生產된 家畜의 販賣方法 및 販賣價格에 관한 사항

⑤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生產하는 種畜은 種畜業者에게 우선적으로 供給하여야 한다.

⑥農林水產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種畜業의 登錄을 하여야 하는 者가 登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種畜등의 輸出入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第1項의 規定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登錄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第27條(畜產業의 登錄 또는 許可) ①일정규모 이상의 畜產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家畜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登錄을 하거나 農林水產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음에 계속)

▲▲▲ 저수태우의 인공수정에 대하여 ▲▲▲

—편집자 —

최근 사양관리에 문제점과 고비유 젖소의 증가로 수태율이 떨어지는 예가 있어 오랫동안 인공수정을 하여 하자가 없는 시술로 생각되어도 만족할만한 수태율을 얻지 못하는 인공수정사를 위하여 인공수정업무 중 좀더 주의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수정 적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수정적기 판단은 발정시작부터 계산해서 판정하는 방법이 있고, 난포를 측지해서 적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가지 모두 참작하여야 하고 특이한 상태(빨리 끝나든지, 아주 늦게 끝나는) 경우를 너무 비중을 두어서는 안된다.

최근에 고영양 사양관리로 배란이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한우에서도 전과 같이 일을 많이 안 시키므로 배란지연 난포낭종의 소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수정적기 판단의 고려해야 할 점은 자기가 수정시키는 업무 지역의 온도, 일조, 강우량, 고도, 주로 급여하는 사료의 질, 축사형태, 사양관리 형태, 양축가의 번식에 대한 상식 정도를 알아서 나름대로 연구판단해야 한다.

2) 발정시간

	시각	발정비율
08:00~12:00		22%
12:00~18:00		10%
18:00~24:00		25%
24:00~06:00		43%

2) 수정기술의 재점검

수태일은 인공수정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것은 정액의 취급부터 주입까지의 기술차이다.

알고 있는 기술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한 취급, 판단, 시술이 아주 중요하다. 동결정액 용해등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3) 발정 상태 판정에 대하여

발정 상태를 자세히 판결하기 위해서 난포를 너무 무리하게 만지지 말고 배란에 입박해서 난소를 가급적 만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소, 난포, 난관채의 부분을 무리하게 만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젖소의 분만후 난소기능 회복 상황상 번식 성적

	고비유군	표준비유군	
정상회복군	회복지연군	정상회복군	회복지연군
두 수	40	15	22
초회 배란일수	33±11	61±19	35±11
초회 AI 일수	70±22	74±17	46±17
초회 AI 수태율	41.7	20.0	63.6
최종 수태율	91.9	80.0	100.0
공태일수	94±49	110±36	85±44
정상회복 분만후 35~49일 이내 회복	지연군 분만후 50일 이후		

4) 수정 후, 배란 확인과 그외 수정은 도움이 안된다.

배란 확인 후 배란이 안됐으면 다시 수정시키는 것은 기본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 적기에 1번 수정으로 죽하고 배란확인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더 크다.

5) 수정 후 자궁내막염 주입은 큰 도움이 안된다.

수정후, 자궁내에 약을 주입하여도 큰 효과가 없다. 저수태 원인 중, 자궁막염은 적고 약액을 조금 넣었다고 치료되지 않는다. 수정전이나 수정후 자궁세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도해 볼만 한 일이다.

젖소의 분만후 자궁내막염 후 번식 성적

	고비유군	표준비유군	
정상	자궁내막염	정상	자궁내막염
두 수	22	32	20
초회 AI 일수	67±19	73±18	69±18
초회 AI 수태율	40.9	28.1	50.0
최종 수태율	86.4	90.6	90.0
공태일수	88±33	105±55	80±33
			107±46

6) 저수태우에 대한 호르몬 처리

현재 저수태우에 대한 호르몬 처리로 수정직후 고나드로진과 GNRH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배란지연 난소낭종 증세가 있는 소에게는 특히,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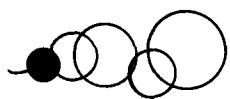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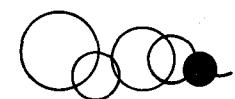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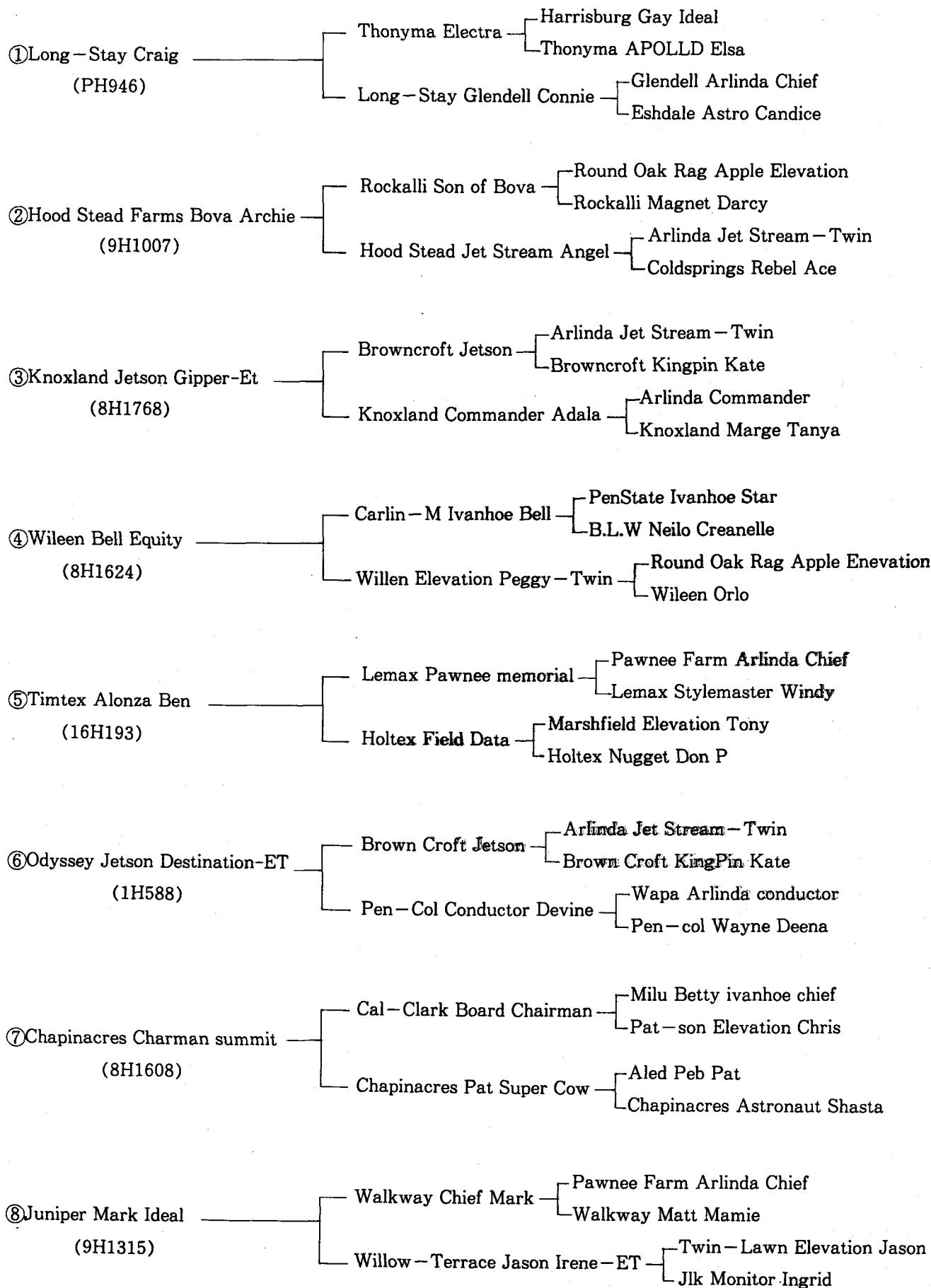
7) 축주의 사양 관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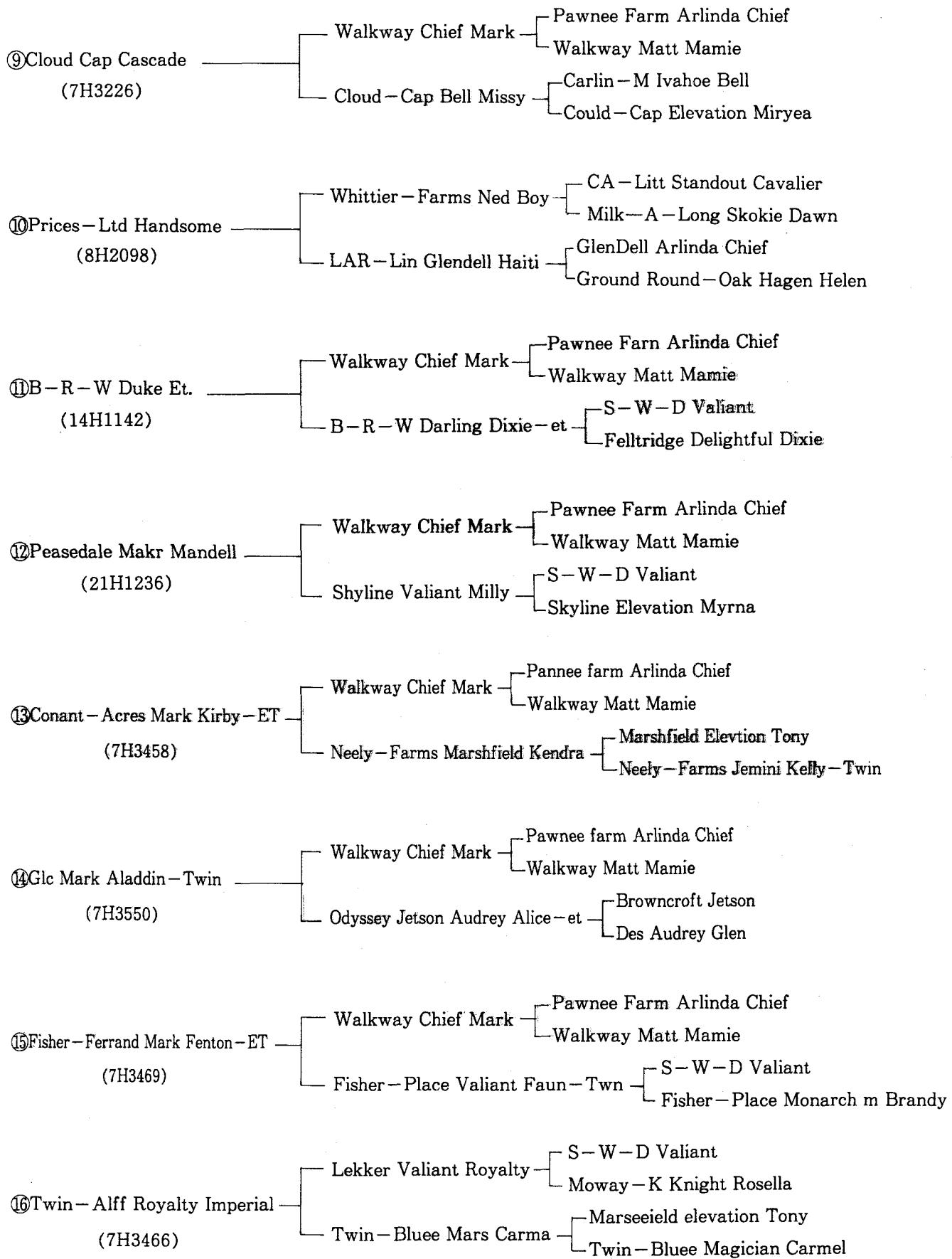
인공수정 출장중 양축가하고 대화를 통해서 건유기의 영양관리, 분만관리, 산육기 위생관리 등을 잘 지도하여 정상적인 사양관리가 되도록 해서 그것이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한다. 또 평균 공태일수, 초회 수정수태율, 수태당 수태일수 등 번식성적을 잘 나타내는 지표를 파악 설명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수태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양축가와 수정사 사이에 신뢰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축수중에는 외국의 500두~1,000두, 50두~100두 규모의 사육관리를 모방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며, 저수태우 관리는 획일적일수가 없고, 그 상황, 경제적인 가치, 양축가의 의식 등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사가 알아야 할 것은 조급한 기술부분이라도 조심조심 시술해야 하며, 무심히 대충처리하는 데서 많은 저수태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 번식관리」에서 일부 발췌


협회공급정책 협통 내역





연도별·도별·축종별·인공수정실적

구 분	'84		'85		'86		'87	
	한육우	젖소	한육우	젖소	한육우	젖소	한육우	젖소
경 기	민간	75,014	122,225	79,993	154,812	55,846	162,374	44,601
	축협	48,423	20,913	42,392	23,782	26,412	25,121	17,792
	계	123,437	143,138	122,385	178,594	82,258	187,495	62,393
강 원	민간	35,895	7,922	45,640	10,642	41,680	12,457	41,544
	축협	44,246	3,483	37,304	3,941	29,712	3,443	25,508
	계	80,141	11,405	82,944	14,583	71,392	15,900	67,052
충 북	민간	55,854	7,606	65,815	11,387	55,199	11,831	52,138
	축협	33,302	3,622	30,342	4,358	22,978	4,995	20,465
	계	89,156	11,228	96,157	15,745	78,177	16,826	72,603
충 남	민간	71,996	24,537	92,166	33,392	86,298	37,684	79,921
	축협	44,977	5,279	41,065	6,394	27,659	5,525	20,961
	계	116,973	29,816	133,231	39,786	113,957	43,209	100,882
전 북	민간	51,605	8,890	60,924	10,682	53,731	12,126	53,628
	축협	38,113	2,784	37,788	3,743	29,747	4,053	23,642
	계	89,718	11,674	98,712	14,425	83,478	16,179	77,270
전 남	민간	41,884	9,072	55,340	13,276	61,855	14,349	66,875
	축협	50,238	5,777	47,022	6,538	32,631	5,137	27,161
	계	92,122	14,849	102,362	19,814	94,486	19,486	94,036
경 북	민간	96,748	17,541	116,470	21,741	114,971	24,519	114,793
	축협	64,419	3,277	57,356	4,383	40,297	4,100	33,413
	계	161,167	20,818	173,826	26,124	155,268	28,619	148,206
경 남	민간	111,326	11,811	112,332	15,295	110,149	19,317	119,111
	축협	45,972	7,336	47,336	10,468	34,044	11,064	28,107
	계	157,298	19,147	159,668	25,763	144,193	30,381	147,218
제 주	민간	1,602	84	1,626	131	2,180	259	1,805
	축협	11,084	584	10,321	675	8,944	577	7,006
	계	12,686	668	11,947	806	11,124	836	8,811
계	민간	541,924	209,688	630,306	271,358	581,909	294,916	574,416
	축협	380,774	53,055	350,926	64,282	252,424	64,015	204,055
	계	922,698	262,743	981,232	335,640	834,333	358,930	778,471
								375,469

구 분	'88		'89		'90		'91		'92		
	한육우	젖소	한육우	젖소	한육우	젖소	한육우	젖소	한육우	젖소	
경기	민간	36,415	176,957	35,331	183,711	36,450	222,079	42,249	177,270	44,971	160,482
	축협	11,873	22,248	8,554	17,352	7,481	15,017	7,982	16,647	10,080	17,282
	계	48,288	199,205	43,885	201,063	43,931	237,096	50,231	193,917	55,051	177,764
강원	민간	45,333	15,999	51,058	18,722	58,871	16,297	65,038	15,716	80,043	16,548
	축협	22,643	2,660	17,523	1,796	14,268	1,581	13,633	2,017	13,929	1,639
	계	67,976	18,659	68,581	20,518	73,139	17,878	78,671	17,733	93,972	18,187
충북	민간	52,741	14,187	56,040	14,889	63,550	15,876	70,539	14,163	75,437	14,955
	축협	16,720	4,814	14,585	4,294	17,236	3,907	22,072	4,258	25,004	3,122
	계	69,461	19,001	70,625	19,183	80,786	19,783	92,611	18,421	100,441	18,077
충남	민간	81,713	45,265	90,806	53,010	96,615	49,623	114,486	52,704	129,207	54,786
	축협	13,841	5,112	13,541	3,622	15,948	3,042	21,557	3,446	26,289	3,933
	계	95,554	50,377	104,347	56,632	112,563	52,665	136,043	56,150	155,496	58,719
전북	민간	52,515	19,576	54,569	20,954	58,643	22,411	66,871	22,249	78,003	23,828
	축협	17,761	3,626	15,377	2,575	17,008	2,536	23,318	3,150	27,432	1,932
	계	70,276	23,202	69,946	23,529	75,651	24,947	90,189	25,399	105,435	25,760
전남	민간	76,200	18,155	86,271	22,949	102,127	25,298	122,550	28,073	154,677	27,824
	축협	25,649	5,422	20,531	3,398	18,640	2,477	21,322	2,490	27,036	2,012
	계	101,849	23,577	106,802	26,347	120,767	27,775	143,872	30,563	181,713	29,836
경북	민간	120,131	35,570	127,122	36,487	141,381	35,223	163,489	38,449	182,257	34,399
	축협	26,502	4,143	19,087	3,077	20,975	1,957	22,564	1,306	26,281	722
	계	146,633	39,713	146,209	39,564	162,356	37,180	186,053	39,755	208,538	35,121
경남	민간	127,800	27,005	127,137	28,419	144,997	24,802	160,620	20,063	182,040	22,423
	축협	22,259	14,637	17,098	14,868	16,042	14,867	16,408	14,048	17,223	13,288
	계	150,059	41,642	144,235	43,287	161,039	39,669	177,028	34,111	199,263	35,711
제주	민간	1,614	3	1,136		679		933	927	2,856	1,463
	축협	5,585	1,268	4,551	1,235	4,773	1,088	4,241	584	3,405	545
	계	7,199	1,271	5,687	1,235	5,452	1,088	5,174	1,511	6,261	2,008
계	민간	594,462	352,717	629,470	379,141	703,313	411,609	806,775	369,614	929,491	356,708
	축협	162,833	63,930	130,847	52,217	132,371	46,472	153,097	47,946	176,679	44,475
	계	757,295	416,647	760,317	431,358	835,684	458,081	959,872	417,560	1,106,170	401,183

협회 활동사항

충북체육대회

일시 : 1993. 5. 2

장소 : 제천농고 운동장

참석인원 : 회원 60여명과 가족.

내용 : 회원간 친목도모 체육대회, 협회 활성화 방안 논의

경기남부 3개지부 체육대회

일시 : 1993. 5. 9

장소 : 양평군 강상면 강상체육공원

참석인원 : 여주, 양평, 이천 회원 50명과 가족

내용 : 회원단합 체육대회, 협회 남부지역 활성화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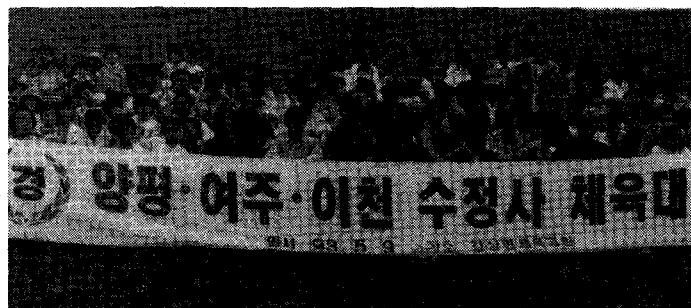


사진 : 경기남부 3개지부 단합 체육대회를 마치고

전국 순회 보수교육 실시

일시 : 1993. 5. 17~27

도별	교육 일자	장소	참석인원			비 고
			축협	협회	계	
경기	5. 25	안양 축협	24	75	99	
강원	5. 24	횡성 사료공장	13	69	82	
충북	5. 27	청주축협	16	46	62	
충남	5. 26	천안축협	16	117	133	
전북	5. 18	전북도지회	23	46	69	
전남	5. 17	광주축협	16	77	93	
경북	5. 19	경북도지회	14	104	118	
경남	5. 20	경남도지회	17	64	81	
계			139	598	737	

순회교육시 건의 내용

회원 수정소 업무 및 제반 애로사항을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내용임.

- 가. 임신감정의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허용 요망.
- 나. 국내산 정액의 공급을 당협회에서 공급토록 체계 개선 요망.
- 다. 축협 수정 시설료의 현실화.
- 라. 한우 자연종부의 실태를 파악 종모축의 등록 및 개량에 역행하는 행위 근절 대책 요망.

마. 자가수정 교육의 효율제고와 정액공급시 무조건 공급보다는 자가 사육증명에 근거한 적정 공급 유도

바. 축산발전과 기금의 민간 수정사에도 보조 혜택 요망.



사진: 수정사 보수교육

개량단지 설문조사

조사시기 : 1993. 6. 3~12

대상 : 개량단지에 속해 있는 회원 대상

조사내용 : 개량 단지내 업무의 애로점, 발전방향 조사.

내용발표 : 이사회에 보고

농림수산부, 축협, 종축 개량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 업무에 참고하기로 함.

장관 간담회 참석

일시 : 93. 6. 14 17:00~21:50

장소 : 축산 회관 회의실

참석자 : 농림수산부장관, 축산국장, 경영과장, 축정과장, 축산관련 단체 및 학회장(25명) 축산신문사 직원

진행방법 : 1. 각 단체, 학회별 축산전반에 관한 건의

2. 장관 직접 즉석 답변 형식

질의내용 요약 :

1. 협회와 회원의 현 상황 설명
2. 개량의 중요성 강조
3. 회원 수정사의 축산시책에 동참유도 활용 희망
4. 정액 공급체계 개선
5. 협회 지원 요청

답변 내용 요약 : 1400여명의 자원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을 자원화해야 하고 개량의 중요성을 새삼 알았다.

축협, 종개협과 함께 협의 추진해야 한다.
지원도 검토해 보겠다.

수정 증명서 서식 개정 논의

일시 : 1993. 6. 18

내용 : 농림 수산부에 서식 변경.

- 현행보다 양축가에 서비스 차원에서 서식내용 변경 건의

상반기 감사 실시

일시 : 1993. 7. 10(10:00~15:00)

장소 : 협회 사무실

내용 : 상반기 집행업무 전반내용 감사

수감자 : 이재우 회장

경기문 사무국장

감사 : 김의성 · 권연중

이사회 개최

일시 : 1993. 7. 10(15:00~20:00)

장소 : 축산회관 회의실

내용 : 이사회 상정의안

제1호안 보고사항

1. 순회보수교육 결과 보고
2. 활동 보고
3. 업무 보고
4. 감사 보고

제2호안 제규정의 제정

1. 이사회 운영 규정
2. 임원, 고문 및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
3. 여비 규정

제3호안 학습세미나 개최의 건

제4호안 축산인 체육대회 참가 건

제5호안 자가수정교육 및 자연 교배에 대한 대책

제6호안 조직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제7호안 소프트웨어 제작

제8호안 기타 토의사항

회원 상별 규정 논의

한우개량단지 설문조사에 대한 협의회

일시 : 1993. 7. 27. 15:00~17:30

장소 : 농림수산부 축산 경영과 사무실

참석자 : 농림수산부 김경남 과장, 정진국 계장, 축협
원유석 과장, 수정사 협회 경기문 사무국장

기록 : 서재호(농림수산부)

협의회 개최 : 한우개량단지 설문서 분석내용 발표와
접수된 공문에 대하여 관련 단체끼리 협조가
필요하여 협의회 개최

토의내용

협회 : 설문조사 배경 설명, 발송취합 및 대상자에 대한 설명, 취합분석 내용 설명

농림수산부 담당관 : 문항별로 설명 요구

협회 : 문항마다 설명, 회원이 느끼는 애로점 전달.

협의내용

1. 민간 수정사에게도 개량단지에 대한 목적, 내용, 추진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기로 함.
2. 인공수정 점차 민간에게 이양하기로 함.(축협 보조금 삭감)
3. 등록 심사 기준 강화 종개협에 지시하기로 함.
4. 협회에서 심사 등록에 대해 교육 요망
5. 지도원, 보조원 시술 금지.
6. 기초 등록 추가는 난색 표명(안된다)
7. 등록우 사육자 명단을 희망하는 민간 수정소에 줄 수 있음.
8. 자연 교배 등 개량단지 문제점은 협회를 통해 수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하겠음 - 농림수산부 담당관)
9. 농림수산부에서 시군에 자연교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기로 함.

서로 소속기관의 입장을 표명 협의하고 앞으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공지사항

학술세미나 개최

일시 : 1993. 10월 중순~11월 상순 중

장소 : 대전이나 천안 중에서 택일함.

내용 : 특강

- 수정란 이식
 - 내분비(호르몬)학
- 증식후
- 회원 연구 발표
 - 각 도에서 회원 2명 이상 연구발표
 - 발표내용 원고 9월 30일까지 협회 송부

축산인 체육대회

일시 : 10월 중 결정

장소 : 서울

종목 : 축구, 배구, 400m 계주, 줄다리기

주최 : 축산신문사

선수 : 각도 2~5명씩 차출

각 회원중에서 참석희망자 도지회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신제품 정액 용해기 공급함.

저축과 보장

직장인 보장보험

— 협회에서 추천하는 보험 —

저렴한 보험료

-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과는 달리 단체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가입연령 만15~65세까지 월보험료가 동일하며 보험금이 1억원까지 무진단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상한선은 48,800원입니다.
- 보험 가입 후 보험료 불임은 지로, 자동이체 등 개별입금됩니다.

고액의 보험금 보장

- 시간·장소에 관계 없이 24시간 어떤 재해사고에도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의 범위가 대단히 큽니다.(산재보험 및 기타 보험에 관계 없이 별도 지급)

10년 만기 가입 예시

가입형태 지급사유	남자			여자		
	월 보험료	20,400원	30,400원	48,800원	15,400원	21,000원
교통재해사망시	4,132만원	6,198만원	1억원	7,281만원	1억원	
재해사망시	2,479만원	3,719만원	6,000만원	4,368만원	6,000만원	
재해장애2급~6급	579~83만원	868~124만원	1,400~200만원	1,019~145만원	1,400~200만원	
질병사망시	826만원	1,239만원	2,000만원	1,456만원	2,000만원	
만기시	납입보험료 전액 + 확정배당금 + 이익배당금 + 장기유지 특별 배당금			3일초과 1일당 10,000원 지급		
재해입원시						

※ 2~3급 재해장애시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타보험과의 비교

	개인보험 (무지개보험)	단체보험 (직장인보장보험)	손해보험 (운전자복지보험)
연령	연령에 비례 보험료 체증	연령에 무관하게 동일 보험료	연령에 무관하게 동일 보험료
기간	10년	10년	5년
월보험료	83,432원	48,400원	90,920원
교통재해사망시	1억원	1억원	5천만원
재해사망시	1억원	6천만원	5천만원
재해2급~6급	585~84만원	14백만~2백만	재해종류에 따라 사정지급

	개인보험 (무지개보험)	단체보험 (직장인보장보험)	손해보험 (운전자복지보험)
일반사망시	1670만원	2천만원	없음
건강진단	有	無	無
운전자	가입안됨	무관함	무관함
만기시	납입보험료	납입보험료 배당금	납입보험료中 일부손실 (6,000원/月)
기타		삼성생명 고객으로 각종 서비스 제공	

상담전화 311-4275.4276.4277, 773-4118 담당자: 01 강민

 三星生命保險株式會社



社團法人 韓國家畜人工授精師協會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1516-5 축산회관 내

TEL : (02) 586-9408 FAX : (02) 586-9408

137-073

